

## 미국판례

### 자동차 판매상을 비난한 전단의 배포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

Hagel v. Vern Sims Ford Inc.

42 Wn. App. 675, 713 P 2d 736(워싱턴 주 항소법원 판결, 1986. 1 . 27)

## 사보개요

피고 하젤은 원고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왔는데,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받은 금액으로 구입가격을 결정하였다. 피고가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산상의 착오가 생겨 180 여 불을 과다 지급한 것이 발견되자 원고가 이를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는 청구서에 적힌 부품가격과 자동차에 스틱커로 붙어 있는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회사에 전화를 걸어 도둑놈들이라고 비방을 하는 일방, 원고회사 및 그 지배인, 세일즈맨 등은 도둑놈들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단을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였다. 피고는 또한 원고회사에게 자신에 대하여 7,500 달러를 지급하고 교회에 5 만 달러의 헌금을 하지 않으면 위 전단을 전주민에게 발송하겠노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 심은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 심도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판결요지

1. 기업체들이 단순히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한 것만으로는 공공의 논쟁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되어 공공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현실적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한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추정되는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libel per se)에도 추정적 손해배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 악의의 입증을 요한다. 다만 일반사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현실적 악의보다 조금 덜한 내용을 입증하더라도 추정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허위로서, 헌법상 보호를 받는 의견의 표현이 아니다. 의견에는 허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 판결이유

스완슨(Swanson) 판결 :

프레드 하젤(Fred Hagel, 이하 하젤)은 번심르 포드사(Vern Sims Ford, Inc.), 보비 마틴(Bobby Martin, 이하 마틴), 그리고 타니엘 F. 심즈(Daniel F.Sims)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해 준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하젤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발표는 실질적으로 사실이었고, 자신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것은 합리적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의견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1978년에 다니엘 심즈는 위싱턴 주 스카지트 카운터에 소재 한 자동차 판매 회사인 번 심즈 포드사의 지배인이었고, 마틴은 그 회사의 세일즈맨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민인 하젤은 그 아들을 통하여 마틴을 알게 되었다. 1978년 9월 하젤은 포드사의 밴 (※ 역주 봉고차 같은 미니버스)의 구입에 관하여 캘리포니아로 부터 마틴에게 연락을 취한 후 그 구입을 흥정하기 위하여 세드로울러 시로 갔다. 한 나절을 걸쳐 하젤 부부가 마틴과 사이에 옵션과 가격에 관하여 흥정한 끝에 구매계약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지배인인 다니엘 심즈와 하젤 부부는 가격을 800 달러에 197 달러의 준비양공과 딜러수수료를 합한 액으로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이 가격은 원래의 소매가격보다 상당히 에누리 된 것이다. 수개월 후 차륜이 도착하였을 때 하젤 부부는 이를 찾으러 세드로울러 시로 가서 새 구입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차를 수령한 후 하젤이 구두로 합의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이 밝혀지자, 하젤은 183 달러 30 센트의 반환수표를 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꿨다. 하젤은 차를 수령한 후 곧 이어 피항소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둑놈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가 청구서를 받은 금액과 자동차유리창이나 회전외자 등에 붙어있는 스틱커에 적힌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183 달러 30 센트를 반환 받은 후에도 그는 자기가 아직도 70 달러 24 센트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젤은 그 거래에 관하여 위싱턴 주 검내 총장실 및 허가담당부서에 고소상을 내고, 세드로울러 신문사, 시애틀 TV 사 및 CBS TV 등을 접촉했다. 1980년 11 월경부터 1981년 8 월경까지 사이에 하젤은 『번 심즈 포드와 그 세일즈맨인 밥 마틴은 도둑놈들이다 !!』 라는 제목을 붙인 위 거래에 관한 전단을 스카지트 카운터에 있는 100 군데의 사람과 사업체에 발송했다. 하젤은 그 자동차판매사의 사주인 번 심즈에게 자기가 들인 비용이라고 하는 7,500 달러를 배상하고, 북음주의파인 오릴 로버츠 교단에 5 만 달러의 현금을 하지 않는 한 스카지트 카운터의 모든 주민에게 그 전단을 우송하겠노라는 편지를 보낸 후 우편당국과 접촉하게 되자 그 발송을 중단하였다. 피항소인들이 하젤을 상대로 제기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하젤이 번 심즈 포드사에게는 7,500 달러, 다니엘 심즈에게는 2, 500 달러, 보비 마틴에게는 5,000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젤은 위 판결과 손해배상명령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항소에 의하여 제기된 쟁점은 (1)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2) 이유 없음이 명백한 항소에 대하여도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뿐이다. 명예훼손소송은 기본적으로는 주법상의 청구원인이긴 하지만 수정헌법 제 1 조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함에는 주법 뿐만 아니라 연방법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우선 주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수정헌법 제 1 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할 일 이 다.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는 (1) 허위성, (2) 보(책보기 145) 특권의 불존재, (3) 과실 및 (4) 손해의 네 가지의 기본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반 사인인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있어 과실의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원고가 공공 인물이거나

공무패인 경우에 원고는 「현실적 악의」, 즉 명예 훼손적 발표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그의 진실여부에 관하여 무분별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거츠(Gertz) 사건에서 공공인물을 일반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공공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거나 특정한 공공의 쟁점에 관하여 관련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최전방에 내던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지위를 갖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명예 훼손적 발표가 있기 이전에 이미 공공논쟁에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젤의 주장은 스테이크스 무한회사 대 디너사건 판례에 따를 때, 광고를 통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가하려 한 매도인이 공공인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피항소인들이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서는 하젤 자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든베어사건(Golden Bear Distrib. Systems v ChaseRevel.Inc., 708 F.2d 944)에서는 만약 기업체들이 단순히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한 것만으로도 공공의 논쟁에 개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업체가 공공인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인 원고는 그러한 것만으로는 공공인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위 골든베어 판결은 위스테인스 사건에 있어서는 허위부고에 관하여 피고인 TV 방송국과 소비자문제 당국에 제출된 수많은 고소상에 의하여 공공논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었던 점에서 각 사건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공논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항소인들은 공업인물이 아니라 사인이고,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서는 현실적 악의가 아니라 단순한 과실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손해배상의 근거를 당연적 명예훼손(libel per se)에 두었기 때문에, 과실과 허위성은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지만, 보호특권이 불존재한다는 점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일정한 발표내용이 (1) 어떤 살아있는 사람을 증오, 경멸, 조롱, 비방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이나 사회적 관계를 박탈하거나, (2) 그의 사보이나 직업을 해하는 경우에는, 당연적 명예훼손(특별한 손해의 입증없이 청구가능)이 성립한다」 Caruso v. Local Union, 1983)

위 카루소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워싱턴 주의 판례법은 일정한 명예훼손이 당연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항변이 없는 한 실제의 손해를 입증함이 없이도 상당한 (책보기 146)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판결선고 이후에 결정되고 앞서 본 거츠 판결에 의존했던 위 카루소 판결에 의하는 경우, 당연적 명예훼손에서의 손해의 추정은 위헌이고, 피고에게 현실적 악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현실적 손해의 발생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명예훼손이 피고의 현실적악의가 아니라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배상 받을 권리는 「현보적 손해」의 보상에만 제한된다. 원고들은 일정한 발표가 당연적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가 추정된다는 당연적 명예훼손의 이론에 따라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1심은 원고들이 현실적 손해를 입증 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않고 있다. 위 카루소 판결에 의하자면, 현실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귀책사유에 관하여 1심은 하젤이 위 전단들을 보냄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무시하였으며 실제 그 내용은 허위였다고 인정하였다. 과실의 기준은 피고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발표내용이 허위이거나 또는 중요부분에 관하여 허위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보적 악의는 발표내용의 허위성의 인식 또는 그의 진실여부에 관한 무분별한 무시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심이 인정한 바는 현실적 악의라고 할 것이다 1심의 인정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그들은 항소심에서도 확정사실로 간주된다. 거츠 판결이 선고된 후, 워싱턴 주 대법원은 「현사적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은 추정될 수 있다」고 명백히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워싱턴 주법에 의하면, 현실적 악의가 입증 된 경우에는 추정적 손해의 배상이 허용된다. 문제는 그와 같은 추정적 손해의 배상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저촉되느냐 여부이다. 거츠 판결은 「주들은 책임의 근거가 허위의 인식 또는 진보의 무분별한 무시에 관한 입증에 있지 않는 한, 추정적 또는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었다. 그런데 거츠 판결은 일정한 상황 아래서는 추정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는 하였으나, 일단 현실적 악의가 입증 된 경우 수정헌법 제 1 조가 손해배상에 어떤 형태라도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무답 인 상태로 남겨 놓았다. 최근에 미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이 되는 발표내용이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현실적 악의에는 미치지 못하게 입증한 때에도 사인에게 추정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 71 조에 위반되지않는다고 판시하였다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105 5.Ct.2939,1985). 그 판결은, 일반사인은 더 많이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에 스스로 처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정부가 일반 개인들을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는 매우 강한데 반하여, 공공관심사가 아닌 사항에 관하여는 언론에 대한 헌법적 가치는 덜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위 Dun & Bradstreet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 내용이 공공관심사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가 이미 증명 되었으므로 추정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더라도 수정헌법 제 1 조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어떤 말이 공공관심사에 관한 것이냐의 여부는 전체 기록에 나타난 표현의 내용, 형식 및 문맥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Connick v Myers, 461 U.S.138, 1983). 위 Connick 판결은, 지방검사보가 같은 청내의 다른 검사보들에게 배포한 청내의 책무, 정책 및 인사문제에 관한 설문표는 극히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공공관심사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더 정확하게는 청내의 내부적 정책에 관한 피용자의 불평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피용자가 일반시민으로서 공공관심사에 관하여 표현하는 경우와 개인적인 고용관계문제에 관하여 표현하는 경우를 구별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하젤은 자신이 전단들을 살포한 목적은 대중에게 자신이 당한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예훼손이 되는 그 표현내용은 공공 관심사 라기보다는 사적인 사업상의 분쟁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Dun & Bradstreet 판결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고, 추정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보호특권이 있는 표현이 아닐 것이라는 점도 명예훼손의 다른 요건이기는 하지만, 피항소인들이 당연적 명예훼손의 이론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의 제기가 없고, 위 표현내용이 보호특권이 있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다. 항소심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속된 관련쟁점에 명시적으로 지적되고 또한 변론 및 법적 전거에 관한 인용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이의사유에 관하여만 검토를 하는 것이다. 하젤은 그의 발표내용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의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하젤의 발표내용이 허위라고 명백히 인정하였다. 의견에는 허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인정은 하젤의 표현내용이 보호를 받는 의견이 아니라, 거츠 판결에 따를 때 아무런 헌법상의 가치를 갖지 않는 사실에 관한 허위의 표현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허위성을 인정한 조처는 항소로서 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상 위와 같은 묵시적 인정을 도출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전혀 없다. 형사범죄를 범했다는 비난으로서의 피항소인들이 도둑놈들이 라는 표현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의견이 아니다. 1심 판결 후에 법의 개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한 항소에 대하여는 변론기일을 따로 열 필요가 없다. 1심 판결을 인용한다.